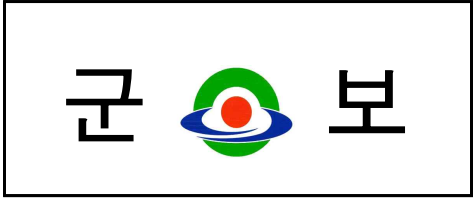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594호 2025. 2. 20.(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효자 명봉천 재해복구 개선사업 실시계획 인가·공고(예천군 공고 제2025-303호)
- 「예천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체육사업소 공고 제2025-6호)

회 람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71)

효자 명봉천 재해복구 개선사업 실시계획 인가·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에 따라 「효자 명봉천 재해복구 개선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0일

예 천 군 수

1. 사업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재해복구사업
- 나. 명 칭 : 효자 명봉천 재해복구 개선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예천군수
- 나. 주 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가. 위 치 :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명봉리 일원
- 나. 면 적 : 68,921m²
- 다. 규 모 : 소하천 정비 L=4.72km 등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가. 사업 착수일 : 2024. 07. 12.
- 나. 사업 준공예정일 : 2025. 12. 31.

5.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조

6.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 열람

- 가. 장 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안전재난과
- 나. 기 간 : 2025. 2. 20. ~ 2025. 3. 7. (15일간)

7. 기타사항 : 기타 문의 사항은 예천군청 안전재난과(☎054-650-65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예천군)	당초 지번	편입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자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주 소	성 명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효자면 명봉리	512	512-3	전	1,058	60	경북 예천군 상리면 명봉리 *01	대 한불교조 계종명*사	-	-	-	
2	효자면 명봉리	513	513-2	대	96	24	경북 예천군 상리면 명봉리 *01	대 한불교조 계종명*사	-	-	-	
3	효자면 명봉리	515-3	515-3	임	337	337	경북 예천군 상리면 명봉리 *01	대 한불교조 계종명*사	-	-	-	
4	효자면 명봉리	515-4	515-4	임	417	417	대구광역시 남구 효서1길 *1(봉덕동)	박*필	-	-	-	
5	효자면 명봉리	534	534-1	답	2,298	15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1080-12 동인아트빌-*01	박*창	-	-	-	
6	효자면 명봉리	547-1	547-9	대	526	5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석항명봉로 *08	김*성	-	-	-	
7	효자면 명봉리	547-2	547-10	답	835	25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석항명봉로 *08	김*성	-	-	-	
8	효자면 명봉리	547-7	547-1 2	답	1,592	34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95 한신아파트 5-*04	이*만	-	-	-	
9	효자면 명봉리	547-4	547-1 1	대	500	10	경상북도 예천군 상리면 석항명봉로 *08	이*만	예천군 새마을 금고	경북 예천군 예천읍 시장로 89-2	근저당권	
10	효자면 명봉리	560	560	천	136	136		미등기	라*규	492	토지대장상 소유자	
11	효자면 명봉리	561	561	전	3,084	3,084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어신1길 *02-8	김*현	지보농 협협동 조합	경북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502	근저당권	
12	효자면 명봉리	542-2	542-4	전	1,775	121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대심3길 12, 나동 *03호(대심빌라)	배*영	-	-	-	1/2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대심3길 12, 나동 *03호(대심빌라)	황*자	-	-	-	1/2
13	효자면 명봉리	389-1	389-1	도	265	265	경북 예천군 상리면 명봉리 *84	신*순	-	-	-	
14	효자면 명봉리	390-2	390-7	대	182	8	경북 예천군 상리면 명봉리 *01	대 한불교조 계종명*사	-	-	-	

15	효자면 명봉리	391	391-2	답	400	70	경북 예천군 상리면 명봉동 *01	대한불교조 계종명*사	-	-	-	
16	효자면 명봉리	391	391-3	답	400	121	경북 예천군 상리면 명봉동 *01	대한불교조 계종명*사	-	-	-	
17	효자면 명봉리	386-2	386-5	답	978	47	예천군 상리면 명봉리 *94	진사*씨 종중	-	-	-	
18	효자면 명봉리	368	368-1	답	1,792	82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석항명봉로 ***1	박*화	예천군 새마을 금고	경북 예천군 예천읍 시장로 121	근저당권	
19	효자면 명봉리	369-2	369-5	답	1,917	93	대구광역시 동구 방천로6길 29, *02호(지저동)	정*선	-	-	-	
20	효자면 명봉리	388	388-1	답	2,132	116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64, 10*동 **03호(무실동, 요진보네르카운티)	도*섭	예천군 새마을 금고	경북 예천군 예천읍 시장로 89-2	근저당권	
21	효자면 명봉리	385	385-3	답	454	80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360 태광사택 ***	박*규	-	-	-	
22	효자면 명봉리	375	375	답	1,518	1,518	경북 예천군 상리면 명봉리 *94	진사*씨종 중	-	-	-	
23	효자면 명봉리	29-4	29-4	답	2,787	2,787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로로 *26번길 *2(십정동)	김*건	-	-	-	
24	효자면 명봉리	14-6	14-6	전	1,712	1,712	경북 예천군 상리면 사곡리 *63	최*섭	-	-	-	
25	효자면 명봉리	16	16	전	1,174	1,174	경북 예천군 상리면 사곡리 *63	최*섭	-	-	-	
26	효자면 명봉리	14-4	14-4	답	552	552	경북 예천군 예천읍 노하동 *7	장*문	-	-	-	
27	효자면 사곡리	460	460-1	임	1,078	683	경북 예천군 예천읍 노상동 *3-2	임*수	-	-	-	
28	효자면 사곡리	456-1	456-3	전	1,996	162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0길 29, 1**동 **05호(황금동, 화성고려파크뷰)	박*희	-	-	-	
29	효자면 사곡리	456-1	456-4	전	1,996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0길 29, 1**동 **05호(황금동, 화성고려파크뷰)	박*희	-	-	-	
30	효자면 사곡리	446-1	446-1	전	2,565	2,565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용궁로 58, 10*동 *01호 (현대타운)	노*주	-	-	-	
31	효자면 사곡리	443-2	443-3	답	886	245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용문경천로 1856, **0호(영남타운)	김*경	-	-	-	1/2
							경상북도 예천읍 대심1길 30, *동 **1호(로얄아파트)	최*숙	-	-	-	1/2
32	효자면 사곡리	484-2	484-2	대	490	490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용궁로 58, 10*동 *01호 (현대타운)	노*주	-	-	-	

33	효자면 사곡리	484-3	484-3	답	1,514	1,514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용궁로 58, 10*동 *01호 (현대타운)	노*주	-	-	-	
34	효자면 사곡리	440	440-1	답	1,150	118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삼가구병길 *80-*	황*래	-	-	-	
35	효자면 사곡리	485	485-1	답	1,501	19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2로 41, 1***동 *04호(초지동, 그린빌아파트)	이*환	-	-	-	
36	효자면 사곡리	512	512-1	답	162	6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2로 41, 1***동 *04호(초지동, 그린빌아파트)	이*환	-	-	-	
37	효자면 사곡리	511	511-1	답	658	136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사곡리 *52	이*철	-	-	-	
38	효자면 사곡리	511	511-2	답	658	13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사곡리 *52	이*철	-	-	-	
39	효자면 사곡리	510	510-3	답	1,788	616	대구 수성구 지산동 *55-3	탁*호	-	-	-	
40	효자면 사곡리	411	411	답	1,068	1,068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용궁로 58, 10*동 *01호 (현대타운)	이*영	-	-	-	
41	효자면 사곡리	520	520-1	답	506	103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사곡리 *67	황*주	-	-	-	
42	효자면 사곡리	287-2	287-1 0	답	108	39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98-10 화창아파트 *01	김*록	-	-	-	
43	효자면 사곡리	288	288-1	답	245	40	경북 예천군 상리면 사곡동 *69	허*복	-	-	-	
44	효자면 사곡리	289	289	답	707	161	국	국(기획재 정부)	-	-	-	
45	효자면 사곡리	293	293-1	답	1,306	200	울산광역시 중구 학산동 *4-5	김*수	-	-	-	
46	효자면 사곡리	294	294-2	답	581	151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320-68 남산주택 10*-*03	김*유	-	-	-	
47	효자면 사곡리	296-1	296-4	답	2,832	46	경북 예천군 상리면 사곡리 *44	한*수	-	-	-	
48	효자면 사곡리	299	299-2	답	2,564	58	경북 예천군 상리면 사곡동 *33	윤*식	-	-	-	
49	효자면 사곡리	299	299-3	답	2,564	292	경북 예천군 상리면 사곡동 *33	윤*식	-	-	-	
50	효자면 사곡리	297	297	잡	66	66	경북 예천군 예천읍 노상리 *3-1	탁*호	-	-	-	
51	효자면 사곡리	298	298	답	298	60	경북 예천군 상리면 사곡리 *44	한*수	-	-	-	
52	효자면 사곡리	314	314-1	답	2,003	1,085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사곡리 *63	최*섭	-	-	-	
53	효자면 사곡리	313	313-1	답	2,261	699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사곡리 *63	최*섭	-	-	-	
54	효자면 사곡리	312	312-1	답	2,906	364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사곡리 *02	박*호	-	-	-	

55	효자면 사곡리	310-1	310-3	답	2,516	560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원10길 19, *층 0*호(신림동)	윤*우	예천농 업협동 조합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시장로 53	근저당권	
56	효자면 사곡리	302-2	302-4	답	1,474	1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6*-1 광운연립 *-*07	김*식	-	-	-	
57	효자면 사곡리	306	306-1	답	1,597	762	경상북도 구미시 해마루공원로 80, 10*동 *01호(옥계동, 옥계중흥에스클래스)	정*옥	-	-	-	
58	효자면 사곡리	307	307-1	답	5,527	140	평택시 지산동 1135 아주아파트 10*-*01	김*유	-	-	-	
59	효자면 사곡리	49-1	49-4	답	1,868	384	안동시 운안동 산92-1 명성한마음타운 30*-*03	최*근	-	-	-	
60	효자면 사곡리	49-2	49-5	답	1,848	189	경북 예천군 상리면 사곡동 *42	박*하	-	-	-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8길 8, 1**동 **01호(도곡동, 도곡1차 아이파크)	권*섭	-	-	-	1/3
							경북 예천군 상리면 사곡동 *56	최*락	-	-	-	1/3
61	효자면 사곡리	442-1	442-1	답	721	204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삼가구병길 *80-*	황*래	-	-	-	
62	효자면 사곡리	441	441	답	79	79	서울 종로구 견지동 *5	대한불교조 계종조*사	-	-	-	
63	효자면 사곡리	299	299-2	답	2,564	58	경북 예천군 상리면 사곡동 *33	윤*식	-	-	-	
64	효자면 명봉리	513-1	513-1	도	211	13	국	예천군	-	-	-	
65	효자면 명봉리	871	871	도	397	1	국	국(건설부)	-	-	-	
66	효자면 명봉리	838	838	구	66,794	13,985	국	국(농림부)	-	-	-	
67	효자면 명봉리	549-3	549-3	도	255	2	국	경상북도	-	-	-	
68	효자면 명봉리	549-7	549-7	도	453	23	국	예천군	-	-	-	
69	효자면 명봉리	870	870	도	265	49	국	국(건설부)	-	-	-	
70	효자면 명봉리	851	851	도	1,527	52	국	국(건설부)	-	-	-	
71	효자면 명봉리	391-1	391-1	도	76	4	국	예천군	-	-	-	
72	효자면 명봉리	853	853	도	1,408	211	국	국(건설부)	-	-	-	
73	효자면 명봉리	837	837	도	4,423	153	국	국(건설부)	-	-	-	
74	효자면 사곡리	619	619	구	14,865	260	국	국(농림부)	-	-	-	

75	효자면 사곡리	산116	산116	구	8,234	5,813	국	국(농수산 부)	-	-	-	
76	효자면 사곡리	605	605	도	40,513	20,480	국	국(건설부)	-	-	-	
77	효자면 사곡리	510-1	510-1	답	225	89	국	예천군	-	-	-	
78	효자면 사곡리	287-4	287-4	답	443	186	국	예천군	-	-	-	
79	효자면 사곡리	287-5	287-5	답	71	71	국	예천군	-	-	-	
80	효자면 사곡리	322	322	임	608	336	국	예천군	-	-	-	
81	효자면 사곡리	319-1	319-1	답	110	70	국	예천군	-	-	-	
82	효자면 사곡리	612	612	구	3,719	45	국	국(농림부)	-	-	-	
83	효자면 사곡리	619-1	619-1	구	21	7	국	국(농림부)	-	-	-	
84	효자면 사곡리	608-1	608-1	구	354	59	국	국(농림부)	-	-	-	
85	효자면 사곡리	624	624	구	4,017	213	국	국(농림부)	-	-	-	
86	효자면 사곡리	621	621	도	1,180	3	국	국(건설부)	-	-	-	
87	효자면 사곡리	619	619	구	1,486	251	국	농림부	-	-	-	
						68,921						

수용되거나 사용할 지장물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 지번	편입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1	효자면 명봉리	515-4	515-4	주택	블록조 및 목조 슬레이트 지붕	38.0	m²	대구광역시 남구 효서1길 *1(봉덕동)	박*필	
2	효자면 명봉리	838	838	창고 및 보일러실	판넬조 판넬지붕	29.8	m²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명봉리 *49-1	서*식	
3	효자면 명봉리	838	838	가추	철파이프조 판넬지붕	9.6	m²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명봉리 *49-1	서*식	
4	효자면 명봉리	838	838	테라스	목조 등 (보수비 포함)	8.4	m²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석항명봉로 *08	이*만	
6	효자면 사곡리	446-1	446-1	창고	경량철골조 등	19.8	m²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용궁로 58 1**동 *01호(현대타운)	노*주	
7	효자면 사곡리	446-1	446-1	관리사(1층)	카라반,경량철골조, 목제데크 등	66.0	m²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용궁로 58 1**동 *01호(현대타운)	노*주	
9	효자면 사곡리	446-1	446-1	관리사(2층)	경량철골조	33	m²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용궁로 58 1**동 *01호(현대타운)	노*주	
8	효자면 명봉리	389-1	389-1	대문	철제, H2*L4 (문주 등 포함)	1	식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석항명봉로 *08	신*길	
10	효자면 명봉리	29-4	29-4	주택기초	콘크리트	95.2	m²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내현길 *	김*견	

예천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예 천 군



1. 조례명 : 예천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예천군 관내 파크골프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파크골프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파크골프장의 위치 규정(안 제1조 ~ 안 제3조)
- 나. 파크골프장의 이용료 등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안 제12조)
- 다. 파크골프장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 안 제 19조)

4.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체육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 1) 전자우편(이메일) : lsb984@korea.kr
- 2) 주소 : 우)36819 경북 예천군 예천읍 양궁장길 38, 체육사업소 시설관리팀
- 3) 팩스 : 054-650-642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체육사업소(전화: 054-650-642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
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관내 파크골프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천군 파크골프장”(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파크골프장, 각종 편익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시설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하는 일반 이용객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군수가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1. 영리 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을 이용한 경우
4.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7.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8. 음주자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이용료) ①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사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2. 예천군 체육회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100분의 50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2. 「예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

13.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구 구성원

14.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15. 18세 미만의 자녀 1명 이상을 동반한 직계존비속

16.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1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할 수 있다.

1. 일일 이용객이 이용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2. 시설 보수로 인하여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연회원이 이용 중에 그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이용료에서 경과한 월만큼의 이용료를 빼고 이용료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운영 및 이용시간) ① 시설의 운영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시간

가. 동절기(11월 ~ 2월) : 09:00 ~ 17:00

나. 그 외 : 08:00 ~ 18:00

2. 이용자 1회 이용시간 : 3시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휴장) 시설의 정기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위탁운영 시 변경할 수 있다.

1. 설, 추석 명절 연휴

2. 매주 월요일

3. 시설 개보수 및 잔디보호를 위한 정기 휴장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10조(시설의 개방) 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천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 운영시간 및 이용시간

2. 이용자 이용 수칙

3. 시설 이용료에 관한 사항

제11조(시설의 개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시설을 질서 있고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파손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이용자는 시설 사용 중 필요한 설비, 구조물 등을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종료와 동시에 철거 후 원상복구 해야 한다.

④ 이용자는 이용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파크골프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 및 체육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방법, 자격 및 기간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의 내용) ① 위탁내용, 위탁조건 등 위탁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군수와 수탁자 간 협약을 통하여 정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인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의 범위 안에서 자체 운영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운영 규정은 위탁 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설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며 운영 수익금에서 사용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의 유지·관리
2.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및 재해 예방대책 수립
3. 시설 주변의 환경 보호와 관리 및 각종 편의 제공
4.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대외홍보
5. 그 밖에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조사의 협조 및 보고, 서류 제출 등

제16조(수탁자의 금지 행위)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설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시설의 임대 및 운영권 전대(轉貸) 행위
3. 시설의 원상(原象)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제17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6조에 따른 금지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경우

5. 수탁자가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8조(보험 가입)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재산 피해 등을 대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으로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관리·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예천군 파크골프장의 명칭 및 위치 (제3조 관련)

명칭	위치	홀 수
한천 파크골프장	1구장 :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127 일원	54
	2구장 :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295-5 일원	
	3구장 :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257 일원	
신도시 패밀리 파크골프장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79-3 일원	18

[별표 2]

예천군 파크골프장 이용료 (제5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이 용 료		비 고
		기본요금	감면요금	
일일 이용객	18세 미만 아동을 동반한 가족단위 이용객		2,000	1인 36홀 기준 3시간 이내
	관내자 (예천군민, 안동시민)	6,000	3,000	
	관외자	10,000	5,000	
연회원		200,000	100,000	
비 고	1. “일일이용객”이란 일일 시설 이용료를 납부 후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 2. “가족단위 이용객”이란 아동과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가 함께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내자”란 주민등록상 예천군 또는 안동시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4. “관외자”란 관내자 외 모든 이용객을 말한다. 5. “연회원”이란 1년 단위의 개인회원을 말한다. 6. “감면요금”이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감면된 요금을 말한다. -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등 7.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이용객에 가장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중복감면 불가) 8. 이용료 납부는 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9. 그밖에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 바에 따른다. □ 연회원 반환금액 산정 · 반환금액 = 결제금액 - 경과한 개월 수(요청한 월 포함) × 10,000원 예시) 65세 이상 연회원 기준, 5월에 결제 후 10월에 환불 요청 시 → 100,000원-(6개월 × 10,000원) = 반환금액 40,000원 ※ 잔디보호기간 휴장(3~4월)으로 인하여 연회원은 실제 10개월 이용 가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 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 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 운집 인파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 세먼지 저

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 수탁자

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 보수는 재산관리관이 직접 시행한다.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민간위탁 사무) ①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 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예술·영상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4. 체육·주민편익시설 관련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교통 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근로자복지·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제4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예천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예천군 신도시 패밀리파크골프장 직영에 따른 시설 관리·운영 비용
(안 제13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한천 파크골프장은 현재 예천군파크골프협회에서 위탁 관리·운영 중인 시설이므로 비용추계서에서 제외함(민간위탁금 연 28백만원)
- 2025년부터 운영 예정인 신도시 패밀리파크골프장 운영에 관한 사항만 작성하였음

3. 비용추계의 결과(신도시 패밀리파크골프장)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이용료	40,320	67,200	67,200	67,200	67,200	309,120
	소계(a)	40,320	67,200	67,200	67,200	67,200	309,120
세출	인건비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350,000
	자산취득비	35,000	-	-	-	-	35,000
	일반운영비	45,800	45,800	45,800	45,800	45,800	229,000
	유지보수비	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70,000
	소계(b)	200,800	145,800	145,800	145,800	145,800	784,000
□ 총 비용(a-b)		△160,480	△78,600	△78,600	△78,600	△78,600	△474,880

※ 2025년 1월 중 무료 시범운영 후, 하반기 내 정식운영 및 유료화 예정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도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군비		200,800	145,800	145,800	145,800	145,800	784,000
민간							
기타							
합계		200,800	145,800	145,800	145,800	145,800	784,000

5. 부대의견 : 없음

6. 작 성 자 : 체육사업소 지방행정사무관 김미라(054-650-6410)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200,800천원(1차년도)

1. 인건비 : 70,000천원

· 매표 및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 : 70,000천원

2. 자산취득비 : 35,000천원

· 승용식 예취기, 카트 등 시설 관리 장비 구입 : 25,000천원

· 책상, 케비닛, PC, 냉장고 등 각종 비품 구입 : 10,000천원

3. 일반운영비 : 45,800천원

- 사무관리비 : 20,000천원

· 모래, 비료 등 시설관리 재료 및 소모품 구입 : 10,000천원

· 이용수칙, 요금표 등 각종 안내판 제작 : 4,000천원

- 청소용품, 화장지 등 각종 운영 소모품 구입 : 3,000천원
- 입장확인 스티커 및 각종 현수막 제작 : 3,000천원
- 공공운영비 : 25,800천원
 - 상하수도요금 : 12,000천원
 - 전기요금 : 4,800천원
 - 기타 공공요금 및 제세 : 4,000천원
 - 장비 유류비 및 수선비 : 5,000천원

4. 시설 유지보수비 : 50,000천원

- 시범운영중 시설 보완사항 정비 : 20,000천원
- 잔디보식, 조경수 관리, 예초 용역 등 시설 유지보수 : 30,000천원